

박승찬 부의장 해임의 건

□ 대표 제출자 : 이대일 대의원

□ 제안 사유, 관련 근거 및 경과, 주요 내용 : 별지 기재

□ 의결주문(議決主文)

“대의원 총회 부의장 박승찬을 해임한다.”

□ 의결요청사항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의원은 이대일 대의원이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한

상기 의안에 대해 찬성하며,

① 정관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

② 해임안의 대상인 박승찬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회피 또는 기피하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소속지부/분회 : _____(시·도) _____(시·군·구)

대의원 번호 : _____ 대의원 성명 : _____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귀하

의안 요구서 보내주실 곳

FAX : 051-343-0097 / E-mail : twotoone@hanmail.net

[별지] 박승찬 부의장 해임의 건

□ 제안 이유

박승찬 부의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1. 2023년 10월 대의원 1/3 이상이 요구했던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의 수령을,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이종안 부의장과 사무처 직원이 협회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비가 오고 차가 밀린다는 이유로 변명을 하고 접수를 거부했으며, 이종안 부의장에게 접수를 대행하도록 하라는 이연희 감사의 권고도 거부하였습니다.
2. 2023년 10월 8일과 10월 15일 두 개의 임시총회가 소집 요구되었을 때,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동참한 대의원들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이,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 바, 정관에도 없는 권한을 주장하며 두 임시총회를 병합함으로써 10월 8일에 임시총회 발의를 요구했던 대의원들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3. 2024년 1월 3일 서면결의 요구서 접수시, 선관위에서 의장과 감사의 제소장을 작성한 당사자이자, 선관위 대표로 윤리위에 의장과 감사의 징계를 요구한 입장에서, 서면결의의 의결 주문에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고 회피 기피가 요구된 상황임에도 끝까지 서면결의에 대한 회피 기피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의원들 및 일반 회원들과 수 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은 이종안 부의장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사무처 직원에게 절대 서면결의 접수를 돕지 않도록 지시하며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서면결의는 무려 101명의 대의원들이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4. 결국 한 주가 지난 후인 1월 10일, 서면결의 요구서를 자신의 고집으로 직접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접수에 참관을 했던 회원 앞에서 ‘서면결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독단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기는커녕, 의장과 감사를 선관위에 제소하는 것에 찬성한 두 감사에게 서면결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해 당사자들이 담합했을 만한 내용을 변명 삼아 서면결의 진행 지연을 정당화하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하였으나, 가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서면결의의 시행을 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상이 박승찬 부의장이 정관을 위배하며 대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던 사례들입니다.

총회에서 의장(직무대행 포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의원 총회의 민주주의적 절차 및 형식의 수호, 자의적이지 않은 관리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서면결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태만 보더라도, 정작 대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결의에 대한 가결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결이 나오더라도 민주적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면, 서면결의를 요구한 대의원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서면결의의 내용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의장 직무대행 박승찬 부의장이 아닌, 대의원들의 집단적 지성입니다. 대의원 총회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대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총회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박승찬 부의장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대의원 전체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교만한 독재자의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대의원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생각하는 확신범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반성을 기대할 길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의원 밴드의 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본인에 대한 대의원들의 해임 시도를 폄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회원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까지 타락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번 대의원 총회의 핵심 과제로 박승찬 부의장의 해임을 꼽고 있습니다. 한의계 민주주의의 파괴자로서의 박승찬을 방치한다면, 그가 저질렀던 민주주의의 파괴는 전례로 남게 됩니다. 의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대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이번 총회에서 그를 퇴출한다면, 회원들에게 대의원 총회는 한의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들의 결의가 의장단의 권한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의원 총회의 권위는 대의원님들의 결단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의 민주주의는 대의원님들의 용기에 의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적 인연과 동정심을 잠시 접어 주시고, 대의를 위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안의 가결을 지지해주십시오.

□ 관련 근거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는 정관 또는 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과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수석부회장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5.24.개정)(2017.11.28.개정)

② 의장은 이사회, 중앙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쳐야 하며 이때에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2017.5.24.개정)